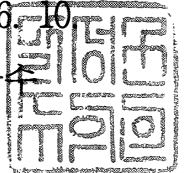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11
----------	-------

제출일자 : 2021. 6. 10

제 출 자 : 달성군수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9호, 시행 2021.6.10.)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4호, 시행 2021.6.10.)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 기간과 재심의 항목 신설(안 제10조)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재심의 신청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6)

-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미가입 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조례」 별표 6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1. 5. 17.~6. 7.)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조문</th><th>적용기준</th><th>과태료</th></tr><tr><td>1. (생략)</td><td></td><td></td><td></td></tr><tr><td>1의2 (신설)</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생략)				1의2 (신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생략)																	
1의2 (신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조문</th><th>적용기준</th><th>과태료</th></tr><tr><td>1.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tr><td>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20조제1항제1의3</td><td>1만원에 1일째부터</td><td>(좌동)</td></tr><tr><td>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td><td></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좌동)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좌동)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좌동)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좌동)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기준	과태료
(신 설)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 1 항 제 1 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좌동)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좌동)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좌동)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u>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u> <u>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u> <u>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u> <u>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u>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